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 박균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525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세 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배경 및 취지	4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4
나. 국제투자분쟁의 의의 및 대응현황	4
2. 제정안의 체계	9
3. 조문별 검토	11
가. 정의(안 제2조)	11
나. 계획 수립 및 인력 양성(안 제4조~제7조)	20
다.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체계의 구축(안 제8조~제14조)	27
라.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 협력(안 제15조~제20조)	36
마. 그 밖의 자구수정 및 부칙	48
IV. 관계기관 의견	5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균택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6. 3. 17.
3. 회 부 일 : 2026.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체계적 대응과 효과적 예방을 위해 2020년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였고, 현재는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하는 3개 과를 포함한 국제법무국 체제로 최근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엘리엇 등을 상대로 하는 ISDS 사건에서 연이어 승소하는 등 전문학적 규모의 국부 유출을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ISDS 중재의향서가 접수된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근래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 간 분쟁까지 ISDS를 통해 우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음. 아울러 공세의 양상도 입법·행정·사법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제투자분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정부 간 협력 의무와 절차,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 관련 기관 간의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ISDS 예방 및 대응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분쟁의 사전 방지 및 승소 가능성을 제고하여 국익을 최대로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국제투자분쟁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과 관련 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1조).

나. 법무부장관이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투자분쟁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제투자중재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무부장관이 국제투자분쟁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제7조).

라.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에 관한 정부 간 협력과 예방 및 대응체계를 총괄하며, 국제투자분쟁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을 규정함(안 제8조).

마. 법무부장관 또는 처분청의 장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

해 필요한 경우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수집, 정보 공유 및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 등이 신
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16조).

사.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 관련 사실 및 분쟁해결절차 개시 사실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과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
장이 상호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법무부장관이 국제투자분쟁 발생가능성을 관리하고, 예방 관련 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국제투자분쟁 관련 예산의 원활한 편성
및 집행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처분청에게는 국제투자분쟁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20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배경 및 취지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제정안은 최근 누적되고 있는 국제투자분쟁과 이에 대한 종합적 대응 필요성에 따라,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과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복잡한 국제 분쟁을 전담하고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의 각종 조치가 국제투자조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점검하여 분쟁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나. 국제투자분쟁의 의의 및 대응현황

전통적인 국제공법에 준거한 분쟁해결절차에서는 국가만이 당사자적격을 가지므로, 국가 간에 체결되는 조약·협약 위반은 당사국 정부 간의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고, 사인인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유치국 법원에서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음.

이에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사인인 투자자의 당사자적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S: Investor - state dispute settlement)”가 조약·협정 체결시에 도입되기 시작하였음. 이를 통해 사인인 외국인 투자자도 투자유치국의

공권력 행사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조약·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임.

우리나라도 한·미FTA, 한·중FTA 등 주요 자유무역협정(FTA)과 투자보장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¹⁾에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의 근거가 도입됨에 따라, “국제투자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투자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조약·협정에서 정한 바²⁾에 따라 중재판정부를 통해 해결하게 됨.

그런데, 투자자의 재산권 침해가 사적 재산권 분쟁이 아니라 “투자자-국가 분쟁”으로서 “국제투자분쟁”이 되기 위해서는 ① 각 조약·협정에서 규정한 “투자”로서, ② “계약당사자”의 ③ “협정에 따른 의무(최혜국 대우, 내국민대우 등) 위반”으로 투자자의 손해가 발생³⁾하여야 함.

이 중 “투자”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또는 투자보장협정에서는 이를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14년 발효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투자를 “자본 혹은 다른 재원의 투입, 수익 혹은 이윤의 기대

1) 2025년 12월 기준 84개 투자보장협정이 발효중(총 101개국 체결, 미발효 5개, 종료 12개)

2) 적용되는 중재규칙으로는 크게 ICSID 협약(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작성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에 따른 ICSID 중재규칙과 UNCITRAL 중재규칙(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이 있음.

3)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발표일 2014. 5. 17.)」

제15조 계약당사자와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 해결

1. 이 조의 목적상 투자분쟁은 계약당사자와 투자자 또는 그 계약당사자 영역 내에서 그의 투자와 관련하여 이 협정에 따른 그 계약당사자의 어떠한 의무의 주장되는 위반으로 인하거나 이로부터 발생한 손실 혹은 손해를 입은 다른 어떠한 계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분쟁이다.

또는 위험의 부담과 같이 투자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이라고 포괄적·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조약·협정의 “계약당사자”인 국가의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대하여,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규범으로서 2001년 유엔 국제법 위원회(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⁴⁾에서 채택하여 유엔총회 결의에 전문이 첨부⁵⁾된 “국제위법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조항”에 따르면,

국가가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국가책임이 성립하는 요건을 ①국제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수 있고, ②국제의무위반을 구성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⁶⁾

이 경우 국가에 귀속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물론, 정부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단체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이루어진 행위도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⁷⁾

4) 국제법의 법전화는 목적으로 1947년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설립된 유엔총회 보조기관으로 국제법 전문 지식을 가진 34인으로 구성된 법률가집단임.

5) 임예준, 「국가책임조항의 규범적 지위에 관한 소고(小考)」,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3호. 2020 국가책임조항에 대한 유엔 총회의 주목은 채택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엔 총회 결의 자체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결의에 부록으로 전문이 첨부되었다는 것은 총회의 일정 정도의 인정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북유럽국가를 대표한 핀란드는 유엔 총회 결의에 첨부됨으로써, 국가책임 문제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성명(statement)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 권위는 다수의 국제재판소가 ILC 국가책임조항을 원용하거나 판결의 기초로 활용 또는 의존하는 선례가 쌓이며 더욱 높아지고 있다. Giorgio Gaja는 국제재판소에서 국가책임조항이 자주 인용되는 이유에 대해 해당 주제의 중요성 및 문서의 우수성과 함께 재판부가 이유로 제시할 수 있는 법규칙을 서술한 다른 문헌이 부재하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현재 국제법상 국가책임 문제에 대해 국가책임조항을 대체할 수 있는 성문화된 문서는 없다.

6)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서의 국가책임 발생범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엘리엇 사건을 중심으로」, 정하늘, 국제법학회논총, 2016, vol.61, no.1, 통권 140호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2년 룬스타(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를 시작으로, 2018년 엘리엇 및 메이슨(한-미FTA), 쉐들러(한-EFTA 부속협정⁸⁾) 등 외국계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 사건이 누적되면서, 정부의 대규모 배상 위험이 현실화되었음.

이와 같은 국제투자분쟁에 대하여, 초기에는 국제투자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의 소관기관을 중심으로 개별 부처가 대응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주무 부처를 법무부로 통일하는 한편, 2020년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을 제정하여 법무부에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설치하여 사건 대응을 전담하였음.

7)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조항(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2001

Article 4. Conduct of organs of a State

1. The conduct of any State organ shall be considered an act of that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whether the organ exercises legislative, executive, judicial or any other functions, whatever position it holds in the organization of the State, and whatever its character as an organ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of a territorial unit of the State.

2. An organ includes any person or entity which has that statu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l law of the State.

(1. 국가 기관의 행위는, 그 기관이 입법·행정·사법 또는 기타 기능을 행사하는지 여부, 국가 조직 내의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여부, 중앙정부 기관인지 영토단위 기관인지를 불문하고,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본다. 2. 기관에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가지는 자연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다.)

Article 5. Conduct of persons or entities exercising elements of governmental authority

The conduct of a person or entity which is not an organ of the State under article 4 but which is empowered by the law of that State to exercise elements of the governmental authority shall be considered an act of the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provided the person or entity is acting in that capacity in the particular instance.

(제4조에 따른 국가 기관이 아니지만 그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정부권한의 요소를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단체의 행위는 그 자 또는 단체가 당해 사안에서 그 권한으로 행동하는 경우,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본다.)

8)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협정[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화국, 스위스연방간의 투자에 관한 협정]

[국제투자분쟁(ISDS) 현황]

(2026년 5월 현재)

연번	사건명 (창구일)	근거 협정	문제 조치 (상대방 주장)	창구액	처분청	주무부처	상황
1	론스타 (2012. 11. 21.)	한-벨기에 BIT	①금융위의 외환은행 매 각승인 지연 ②국세청의 관련 과세	46.8억 USD (약6조9천억원)	금융위 국세청	법무부	전부승소 (론스타 측 2차중재가능)
2	하노칼 (2015. 4. 30.)	한-네덜란드 BIT	국세청의 현대오일뱅크 주 식 매각 과세	2.5억 USD (약4천억 원)	국세청	국세청	종료 (취하)
3	다야니(1차) (2015. 9. 14.)	한-이란BIT	금융위의 KAMCO를 통한 대우일렉 주식 매매 계약 금 몰취	935억원 (한화 창구)	금융위	금융위	패소
4	엘리엇 (2018. 7. 12.)	한-미FTA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의 삼성물산 합병 건 투표 찬성 압력 행사	7.7억 USD (약1조1천억원)	복지부	법무부	취소소송 1심 승소 후 환송중재절차 진행 중
5	미국 투자자 (2018. 7. 12.)	한-미FTA	국토부 등의 서○○ 소유 주택 수용	300만 USD (약42억 원)	국토부		승소
6	메이슨 (2018. 9. 13.)	한-미FTA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의 삼성물산 합병 건 투표 찬성 압력 행사	2억 USD (약2800억원)	복지부		패소
7	원들러 (2018. 10. 11.)	한-EFTA 부속협정	금융위/금감원/공정위의 현대 엘디메이터 부당 유상증자 및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등	2.2억 USD (약3250억원) (최초 창구액 약4,900억원)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		전부 승소 (원들러 측 취소소송 가능)
8	중국 투자자 (2020. 7. 18.)	한-중 BIT	①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 ②만항사법원의 부당한 재판	1.9억 USD (약3천억 원) (최초 창구액 약 2조 원)	금융위		전부 승소 (취소절차 진행중)
9	부산 투자자 (2021. 5. 7.)	한-미FTA	재개발에 따른 수용	537만 USD (약75억 원)	국토부		진행 중 (절차중단)
10	다야니(2차) (2021. 10. 18.)	한-이란BIT	다야니 1차 ISDS에 대한 배상금 미지급	5억 EUR (약8천억 원)	금융위		진행 중

자료: 법무부

제정안은 법무부가 현재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총괄하고 있는 국제투자분쟁 대응체계⁹⁾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국제투자분쟁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정부 간 협력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ISDS 예방·대응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제정안의 체계

제정안은 3개의 장 및 20개 조문과 2개의 부칙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투자분쟁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제2조), 법무부장관에게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제4조),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 및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의 구성·운영(제8조부터 제13조까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관련하여 각 장의 세부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음.

9) 「ISDS 전담조직 신설 및 대응 현황」, 법무부, 2020. 8.

제도 초기에는 제기되는 ISDS 사건마다 주무부처와 대응체계가 달랐음. 2012년 제기된 론스타 사건은 법무부가, 2015년 제기된 하노칼 사건은 국세청이, 같은 해 제기된 다야니 사건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주무부처로 대응함. 그러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대응방향을 정하고 주무부처를 지정하는 종전의 임시 대응체계를 취할 경우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2018년 이후 제기된 ISDS 사건들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통일하였고, 2019년 4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국제투자분쟁 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법무부에 설치하였음.

[제정안의 장별 구성]

장	주요 내용		
—	제1조	목적규정	
	제2조	국제투자분쟁, 분쟁해결절차 등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장 (계획 수립 및 인력 양성)	제4조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 수립	
	제5조	국제투자중재시설의 설치촉진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제6조	국제투자분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7조	재정 지원	
제2장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체계)	제8조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	구성 및 기능
	제9조		비상임단원의 결격사유
	제10조	자문위원	
	제11조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	구성
	제12조		기능
	제13조		제척 및 회피
	제14조	비밀유지의무	
제3장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 협력)	제15조	국제투자분쟁 관련 협력 및 인력파견 요청	
	제16조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 관련 협력	
	제17조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 통보	
	제18조	분쟁해결절차 개시 사실 통보	
	제19조	국제투자분쟁 이행점검	
	제20조	예산편성 및 집행	

3. 조문별 검토

가. 정의(안 제2조)

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국제투자분쟁’(제1호), ‘분쟁 해결절차’(제2호), ‘행정기관’(제3호), ‘유관기관’(제4호), ‘분쟁관계기관’(제5호), ‘처분청’(제6호), ‘국제투자중재시설’(제8호) 등을 규정함.¹⁰⁾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투자분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약·계약 등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발생하는 투자 관련 분쟁(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한 불복 및 판정의 집행 등 제반 절차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자유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약 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유관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간의 계약 다.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유관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간의 양해각서 라. 그 밖에 명칭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유관기관이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일체의 합의 2. “분쟁해결절차”란 중재의향서 접수 등 국제투자분쟁의 통보에서부터 종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되는 절차를 말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나. 대통령 소속기관 및 보좌기관 다. 국무총리 소속기관 및 보좌기관

라. 지방자치단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포함한다)

마.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4. “유관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다.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라. 국제투자분쟁의 상대방이 국가행위의 귀속을 주장하는 법인·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5. “분쟁관계기관”이란 제8조제2항에 따른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의 단장이 국제투자분쟁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해 지정하는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을 말한다.

6. “처분청(처분소관기관)”이란 제5호에 따른 분쟁관계기관 중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의 단장이 국제투자분쟁의 원인이 되는 처분 등을 소관하는 것으로 인정해 지정하는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을 말한다.

7. “중재판정부”란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기 위하여 해당 국제투자분쟁에 적용되는 조약 또는 중재규칙 등에 따라 단독중재인 또는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8. “국제투자중재시설”이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분쟁해결시설로서, 국제투자분쟁 해결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고 중재 심리 장소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기구 및 국제중재기구(지역 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그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시설을 말한다.

10) 안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현행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함(안 제2조제3호마목 제외).

첫째, 제정안은 “국제투자분쟁”(안 제1호)을 정의하면서, 안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정하는 분쟁해결절차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발생하는 투자 관련 분쟁으로 규정함. 이 때 당사자는 대한민국 또는 행정기관·유관기관으로, 준거규정은 조약·협약과 계약, 양해각서 그 밖에 일체의 합의를 포함한다고 함.

이 경우 “행정기관”(안 제3호)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포함하고, “유관기관”(안 제4호)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과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사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안 제2조제1호 각 목의 규정]

구분	당사자	준거
가목	대한민국	FTA, BIT,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약
나목	대한민국,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의 행정사무 처리기관 등), 유관기관(공공기관 등)	계약
다목		양해각서
라목		일체의 합의

그런데, 제정안은 “국제투자분쟁”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범위에 대하여 국가(대한민국)와 지방자치단체, 그 행정기관·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까지 포함하고 있음.

유엔 국제법위원회에서 채택한 「국제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초안」의 국가책임 성립 기준에서도 국가기관의 행위는 물론, 정부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단체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이루어진 행위도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과¹¹⁾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행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내부에 행정사무 처리 기관을 둔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에 포섭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법원을 포함한 독립기관의 행정사무 처리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포섭하여 제정안에 따른 의무를 부과¹²⁾하거나, 법무부장관 및 그 산하조직(대응단)의 관리·감독에 놓이도록 하는 것은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1)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 9. (생략)

③ ~ ⑩ (생략)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12)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예산편성 협조(안 제4조),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 협력(안 제16조제1항), 대응단 단장 요청에 따른 관련 자료 보존·제출(안 제16조제3항), 소속 공무원의 증언 및 진술(안 제16조제4항), 단장에 대한 각종 통보(안 제17조제1항, 제18조), 법무부장관의 국제투자분쟁 예방 관련 준수사항의 이행 상황 점검 수검(제19조제1항)

특히, 사법행정과 같은 독립기관의 행정사무보다는 특정한 재판 자체가 국제투자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재판과 관련한 국제투자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이라는 접근은 재판독립 보장과 관련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법원 등 독립기관에 대하여는 분쟁관계기관이 된 경우에 한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대응단과 비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거나, 유사 입법례¹³⁾를 고려하여 독립성에 대한 간섭이 문제될 수 있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한편, “국제투자분쟁”의 범위를 결정하는 또 다른 기준인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한 준거’의 범위에 대하여, 제정안은 조약·협정뿐만 아니라 계약·양해각서를 포함한 법적 효력이 있는 일체의 합의에 따른 분쟁 해결절차를 근거로 발생한 분쟁으로 규정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국가나 행정기관의 단순한 ‘계약 위반(Contract Claim)’은 국제법규 위반과 구별되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S)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그러나 투자보장협정에 “국가는 투자자와 맺은 어떠한 의무도 준수한다”라는 조항(우산조항, 포괄적 보호조항)이 포함된 경우, 계약이나 양해각서 위반도 국제법규 위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¹⁴⁾¹⁵⁾

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 (생략)

② 제2조제3호가목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안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투자분쟁”은 이러한 포괄적 보호 조항에 따라 국가와 투자자 간에 체결한 일반적인 계약 위반이 투자보장 협정 등의 의무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 등을 선제적으로 고려하여 분쟁을 예방·대응하기 위하여 그 범위를 최대한 확장한 것으로 보임.¹⁶⁾¹⁷⁾

14) 「국제투자보호조약상 <우산조항>의 효력: <엘빠소 對 아르헨티나 사건> 국제중재판정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2010, 제93호, pp.1~38.

‘우산조항’이란 특정 국가 및 공공기관과 외국 개인투자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의 이행을 보장할 목적으로 해당 계약의 이행의무를 국제조약(특히 양자투자보호협정)상에 명시한 규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Umbrella Clause’ 또는 ‘Respect Clause’ 등으로 지칭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 조항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국제투자계약의 이행의무를 투자조약 당사국간의 구체적 합의로 남기는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 계약에 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해당 조약이 마련하고 있는 국제법정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5) 「국제투자조약상 포괄적 보호조항(Umbrella Clauses)의 해석에 관한 연구」, 조희문, 仲裁研究, 2009, 제19권제2호, p.109

판례는 적용되는 투자계약의 성격이 어느 특정성을 가져야 하는지 또는 상거래를 포함하여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정부의 주권행위라는 특성의 공공계약만이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의 중재판례를 분류해보면 대략 투자에 관한 모든 계약이 적용된다는 광의의 해석과 특성의 공공계약만이 적용대상이 된다는 협의의 해석으로 대립되어 있다. 즉, 중재판정부의 중재인들의 구성에 따라 해석에 차이가 난다는 것으로, 결국 ICSID중재판정부가 수시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6) 헌법기관의 경우 국제투자분쟁의 기반이 되는 조약·협정 등을 체결할 권한은 없고, 이를 비준(입법부)하거나 이를 준거로 판단(사법부)하게 됨.

17) 「투자자·국가소송(ISD) 최신 판정분석」, 법무부, 2014.

국가책임이란 국제법의 주체인 국가가 국제규범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담하는 법적 책임으로서, 전통 국제법상의 국가책임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성립한다. 국가책임이 성립하려면 먼저 국제의무의 위반 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그러한 행위가 해당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법행위를 당해 국가에 귀속시키려면 그 국가의 기관이 국제 의무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직접 행하거나, 제3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국내적구제(local remedy)’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요컨대, 국제 위법행위의 존재, 국가행위로의 귀속성, 손해의 발생 등이 필수요건이 된다.

국가책임의 필수요건 중 투자중재에서 많이 다투어지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특정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투자유치국 정부의 행위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 즉 국가행위로의 귀속성에 관한 문제이다. 피신청국인 투자유치국 입장에서는 국가의 행위가 아닌 특정 기관의 행위이므로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하는 투자중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신청인은 표면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의 성격을 갖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투자유치국의 책임이고 투자유치국 정부가 최종 책임자가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중재판정례에서는 특정 조치나 행위가 국가행위임을 부인하는 피신청국의 항변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각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둘째, 제정안은 “분쟁해결절차”(제2호)를 국제투자분쟁의 통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되는 절차를 말한다고 규정함. 현재 국제투자분쟁 대응절차는 중재의향서의 접수로 개시되어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 제기를 통해 국제중재절차가 진행됨.

[국제투자분쟁 절차]

진행절차	주요내용	소요기간
①중재의향서 접수		
②사전 협의/협상	협상·협의 통해 분쟁해결	3~6개월
③중재 제기 및 등록		3~4주
④중재재판부 구성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	3~4개월
⑤본안 절차	서면(준비서면, 답변서 등), 심리(변론 및 증인신문)	2.5~3.5년
⑥절차종료선언		
⑦중재판정		120~180일
⑧취소신청 등 사후절차		취소신청 시 1~3년 소요

자료: 법무부

중재의향서 접수를 통해 국제투자분쟁 개시 의사가 통보된 이후에도 곧바로 중재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협의·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는 점, 중재재판부의 중재판정 이후에도 취소소송 등 사후적인 절차가 존재¹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재절차”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분쟁해결절차”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18)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삼성물산 합병 건과 관련된 엘리엇과 정부의 국제투자분쟁 사건(한-미FTA 준거)에서 정부는 영국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중재절차로 재환송되었음.

다만, 안 제2조제1호에서 “국제투자분쟁”의 정의에서 “분쟁”을 중재판정부의 관정에 대한 불복과 판정 집행 등 제반 절차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제투자분쟁의 종결이 중재판정의 확정(불복 절차의 종료)을 의미하는지, 그 이후 각국 국내에서의 강제집행 절차를 포함한 후속절차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셋째, 안 제2조제5호 “분쟁관계기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의 단장이 국제투자분쟁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하는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을, 안 제2조제6호 “처분청”은 그 중 국제투자분쟁의 원인이 되는 처분 등을 소관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하는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함.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내용과 쟁점이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에 관계되는 기관 역시 불확정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 것임. 다만, “분쟁관계기관”에는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의 정의상 정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 광범위한 기관·단체가 포함될 수 있음.

그러므로 관계기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 기관을 분쟁관계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주무부처나 소속 지방자치단체¹⁹⁾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거나, 관계부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는 등 분쟁관계기관을 지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9)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경우 주무부처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존재(예: 엘리엇 사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하고, 정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단체와 관련하여 이를 위탁한 행정기관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처분청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 자체로 정의하여, 해당기관의 장을 “처분청의 장”과 같이 표시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처분청은 행정각부의 장관과 같이 행정기관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청을 의미하는바, 그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국제투자중재시설”(안 제2조제8호)이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분쟁해결시설로서 국제투자 분쟁 해결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고 중재 심리 장소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기구(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로 규정함.²⁰⁾

그런데,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분쟁해결시설을 ①심리(審理)실, 회의실, 그 밖에 분쟁 해결을 위한 심리의 진행을 위한 장소, ②중재(仲裁) 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활동에 제공되는 사무실 또는 홍보실 ③전문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시설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는바, 그 포괄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중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중재를 말한다.
2. “중재산업”이란 중재의 유치 및 심리(審理) 등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각종 산업을 말한다.
3. “분쟁해결시설”이란 중재를 비롯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각종 심리의 진행, 중재 유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분쟁해결시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장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 심리(審理)실, 회의실, 그 밖에 분쟁 해결을 위한 심리의 진행을 위한 장소
2. 중재(仲裁) 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활동에 제공되는 사무실 또는 홍보실
3.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시설

나. 계획 수립 및 인력 양성(안 제4조~제7조)

1)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안 제4조)

안 제4조는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진흥을 위한 국제투자분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이를 위한 관계 기관의 장의 자료 제출 및 예산 편성 등의 협조를 요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안 제4조제1항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국제투자분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외국인투자 고충관리와 국제투자분쟁 위험요소의 조기식별에 관한 사항, 국제투자중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또한, 안 제4조제2항·제3항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입법부·사법부의 행정사무 처리 기관에 자료 제출 및 예산 편성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

제 정 안
제4조(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국제투자분쟁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 고충 관리 및 국제투자분쟁 위험 요소의 조기식별에 관한 사항
2. 국제투자중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투자분쟁 관련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체계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입법부·사법부의 행정사무 처리기관에게 자료 제출 및 예산 편성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의 수립, 협조 요청의 범위 및 방법, 기본계획의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이미 개시된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하는 업무에 더하여 국제투자 분쟁 위험요소를 조기에 식별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투자분쟁 전문인력의 양성과 연구·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먼저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및 예산편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사항과 관련하여, 법률 제·개정(입법부)이나 판결(사법부)²¹⁾도 조약·협정 위반으로 국제투자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 제출 협조는 필요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21) 2020. 7. 18. 중국 투자자가 한-중 BIT에 근거하여 제기한 중재사건에서는 재산권을 침해한 문제 조치로 ①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과 ② 민·형사법원의 부당한 재판을 주장한 바 있음.

그러나 각 행정기관은 물론 헌법기관인 국회와 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예산 편성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헌법²²⁾ 및 국가재정법²³⁾상 예산편성권은 행정부(기획예산처)에, 심의·의결권은 입법부에 두고 있는바, 각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방법은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1항제1호는 기본계획의 범위에 ‘외국인투자의 고충 관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의 촉진에 관한 업무는 현재 산업통상부의 소관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에서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²⁴⁾

22)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생략)

1. ~ 3. (생략)

23) 「국가재정법」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①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료의 제출

2. 관련직원·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진술

3. 현장방문 협조

④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해당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안 제1항제2호의 ‘국제투자중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국제투자중재시설은 안 제2조제8호에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분쟁해결시설”이라고 규정하는데, 같은 법 제3조 제1항제2호에서 이미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 계획 수립 대상 중복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²⁵⁾

그 밖의 경미한 자구 수정사항으로, 안 제2항 “입법부·사법부”의 범위가 불명확한바 “국회, 법원” 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으로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5항의 “기본계획의 시행 방법”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통상적인 입법례를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⑤ 제4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 ⑨ (생략)

⑩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고충처리기구를 둔다.

⑪ 고충처리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재의 활성화 및 유치에 관한 사항
2.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중재 관련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투자중재시설의 설치,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안 제5조~제7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국제투자중재시설의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과 국제투자분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하여 국가가 이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국제투자분쟁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제 정 안
제5조(국제투자중재시설의 설치 등) 국제투자중재시설의 유치 등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에 관해서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제6조(국제투자분쟁 전문인력 양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제투자분쟁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교육시설, 교육요원의 확보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교,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제투자분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국제투자분쟁 전문 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원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정 지원)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국제투자중재시설의 유치 등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하는 사업
2. 제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국제투자분쟁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

구체적으로, 안 제5조는 국제투자중재시설의 설치 촉진과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는 중재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시설의 설치·운영, 국제협력, 그 밖에 분쟁해결시설 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²⁶⁾

26)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분쟁해결시설의 설치·운영
2.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3. 그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법무부장관은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을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분쟁해결시설의 홍보
2. 그 밖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중재제도 이용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업
2. 중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3. 중재산업 실태 및 통계 조사
4.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운영
5. 정부·공공기관의 중재 활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6. 중소기업·소상공인·저소득층에 대한 중재제도 이용의 지원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5조제2호에서 “대

다만, 안 제5조와 관련하여, ①국제투자중재시설은 제정안 제2조제3호에 따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해결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 제5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분쟁해결시설에 해당하는 국제투자중재시설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따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6조는 국제투자분쟁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

관련하여 안 제6조제3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상으로는 불명확하나 일반적인 입법례를 고려하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판단됨.²⁷⁾

그런데, 안 제7조제2호에서도 국가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안 제6조제3항을 삭제하는 등 자구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분쟁해결시설의 설치·운영
2. 분쟁해결시설의 홈페이지 구축·운영
3. 분쟁해결시설의 모니터링 및 평가
4. 분쟁해결시설 관련 국제교류·협력
5. 분쟁해결시설 운영 전문 인력 양성
6. 해외 분쟁해결시설에 대한 연구·조사

27) 안 제6조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체계의 구축(안 제8조~제14조)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투자분쟁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단의 구성·운영(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과 관계 기관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한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의 설치·운영(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 정 안
제8조(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단의 구성 및 기능) ① 법무부장관은 국제투자분쟁에 관한 정부 간 협력과 예방 및 대응체계를 총괄하며, 국제투자분쟁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단(이하 “대응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대응단은 단장,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하며, 대응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③ 대응단의 상임단원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무조정실 2. 기획예산처 3. 재정경제부 4. 외교부 5. 법무부 6. 산업통상부 ④ 대응단의 비상임단원은 분쟁관계기관(제3항 각 호의 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 중에서 해당 분쟁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단장은 대응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⑥ 대응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지침 수립에 관한 업무
2.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의 검토 및 예방에 관한 업무
3. 국제투자분쟁 사건 대응 전략의 수립에 관한 업무
4.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의 선정 및 지휘·감독에 관한 업무
5. 처분청(처분소관기관)의 국제투자분쟁 대응 예산 및 배상금 등 편성과, 예산 집행 협조에 관한 업무
6. 대리인 선임 비용 및 그 밖에 국제투자분쟁 대응을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한 적정성 심사와, 관련 비용 집행 기준 마련에 관한 업무
7. 분쟁관계기관에 대한 국제투자분쟁 관련 사실관계 검토, 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
8.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동향, 행정처분, ombudsman 사례 등 자료·정보의 조사·수집 및 검토에 관한 업무
9. 국제투자분쟁 관련 예방 교육 및 법률자문에 관한 업무
10. 국제투자분쟁 발생 시 외국인 투자자와의 협상, 합의 및 조정 절차 대응 관련 업무
11.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국제투자분쟁 예방 관련 준수사항의 이행 상황 점검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단장은 국제투자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10조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대응단의 회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결격사유) 유관기관의 소속 임직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응단의 비상임단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자문위원) ① 단장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법

적 조언과 자문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 제도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11조(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 ① 법무부장관 또는 처분청(처분소 관기관)의 장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이하 “관계부처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국제투자분쟁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국제투자분쟁 관련 협력체제를 긴밀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이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관계부처회의는 의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계부처회의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이 된다.

③ 관계부처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의 차관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예산처
2. 재정경제부
3. 외교부
4. 법무부
5. 산업통상부
6. 그 밖의 분쟁관계기관인 행정기관

④ 관계부처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하는 관계부처회의의 의장은 국제투자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10조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관계부처회의의 기능) ① 관계부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 투자자와의 협상 시 합의안 평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국제투자분쟁과 관련된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배상금 편성 주체 결정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 예산의 편성 주체 결정 및 예산 협조에 관한 사항
 4. 국제투자분쟁 관련하여 분쟁관계기관 간 이견이 있거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항
 5. 국제투자분쟁 발생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한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간 협의 및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대응단에서 관계부처 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중요 사항
- ② 제11조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부처회의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① 관계부처회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국제투자분쟁의 대상이 되는 투자의 투자자이거나 해당 투자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2. 국제투자분쟁의 대상이 되는 투자의 투자자이거나 해당 투자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관계부처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② 관계부처회의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관계부처회의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비밀의 유지)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은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의 구성 및 직무는 현재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조부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의 구성 및 직무와 유사함.

그러므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의 직무를 국제투자분쟁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등 관련 기능을 확대하면서, 그 설치·운영 근거를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대응단 업무 비교]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의 <u>작성</u> 에 관한 업무	1.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지침 <u>수립</u> 에 관한 업무
2.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의 <u>검토</u> 에 관한 업무	2.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의 <u>검토 및 예방</u> 에 관한 업무
3. 국제투자분쟁 대응전략의 수립에 관한 업무	3. (좌 동)
4.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을 대리하여 분쟁해결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의 선정 및 지휘·감독에 관한 업무	4. (좌 동)
<신 설>	5. <u>처분청의 국제투자분쟁 대응 예산 및 배상금 등 편성과, 예산 집행 협조에 관한 업무</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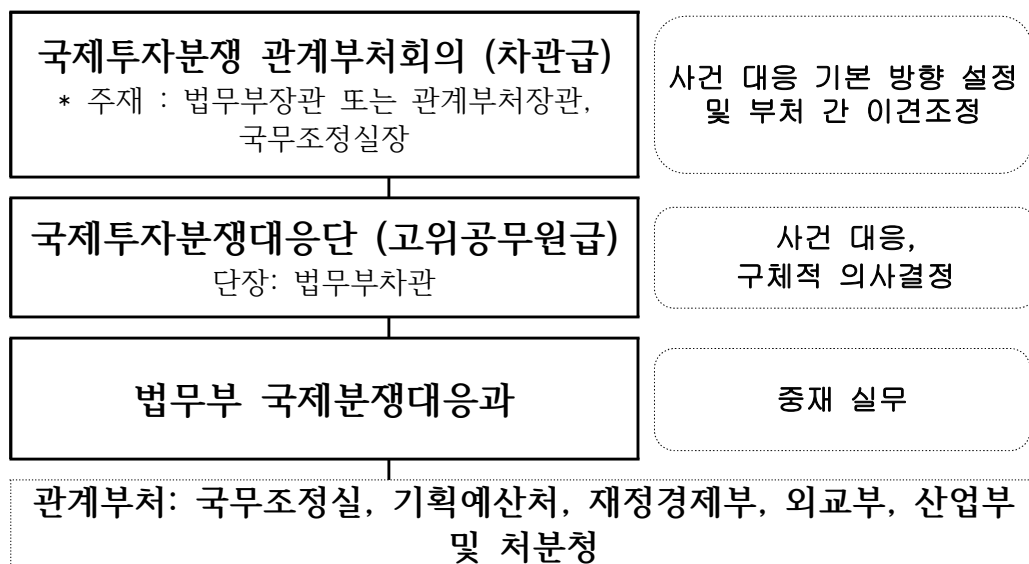
[대응단 업무 비교]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제정안
5. 대리인 선임 비용 및 그 밖에 국제투자분쟁 대응을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한 <u>적정성 심사</u> 에 관한 업무	6. 대리인 선임 비용 및 그 밖에 국제투자분쟁 대응을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한 적정성 심사와, <u>관련 비용 집행 기준 마련</u> 에 관한 업무
6. 분쟁관계기관에 대한 국제투자분쟁 관련 사실관계 검토 및 의견 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	7. (좌 동)
7.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동향, 행정처분, 음부즈만 사례 등 자료·정보의 조사·수집 및 검토에 관한 업무	8. (좌 동)
8. 국제투자분쟁 관련 예방 교육 및 법률자문에 관한 업무	9. (좌 동)
<신 설>	10. <u>국제투자분쟁 발생 시 외국인 투자자와의 협상, 합의 및 조정 절차 대응</u> 관련 업무
<신 설>	11. <u>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국제투자분쟁 예방 관련 준수사항의 이행상황 점검</u> 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업무	12. 그 밖에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업무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또한,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관계부처회의” 역시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제9조를 상향규정하는 것임.

현재의 국제투자분쟁 대응체계는 국제투자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대응은 총괄적으로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에서 대응하되,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 등 대응방향 설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국제투자분쟁 대응체계 개요]



자료: 법무부

먼저,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과 “관계부처회의”의 구성과 관련하여 안 제8조와 제13조 각각 재적단원과 재적위원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는 대응단의 비상임단원과 관계부처회의의 비상임위원은 국제투자분쟁 사건별로 지정되는 분쟁관계기관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분쟁관계기관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다만, 관계부처회의와 대응단은 모두 국제투자분쟁에 있어 상이한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고 국제투자분쟁과 관계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조직인바, 회의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상임단원(위원)과 비상임단원(위원) 간 대강의 구성과 비중을 사전에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법률에 재적인원의 상한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⁸⁾

또한,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와 관련하여, 먼저 “관계부처회의”의 위원은 기획예산처 등 5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차관급 공무원 및 “그 밖의 분쟁관계기관인 행정기관” 소속 차관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제9조에서 분쟁관계기관인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만을 의미하나, 개정안에서는 헌법기관에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추가되었음.

“부처”는 통상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하는 표현이므로, 관계부처회의의 위원에 포함되는 행정기관의 범위가 “중앙행정기관”인지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기관”인지 명확히 하거나, “관계부처회의”의 명칭을 실제 위원 범위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⁹⁾

28) 법률에서는 대응단의 의사결정 방식은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훈령에서는 단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관계부처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함.

한편,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으로, 안 제11조제1항 중 “국제투자분쟁 관계 행정기관”은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분쟁관계기관인 행정기관”을 인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분쟁관계기관인 행정기관”으로 자구를 통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13조의 제척 및 회피 규정에서 “관계부처회의의 위원”이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일반적인 입법례³⁰⁾와 달리 의장이 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형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관계부처회의의 의장도 위원과 같이 제척 및 회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안 제11조제2항의 법문을 “의장을 포함한 O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라고 수정하거나 안 제13조제1항의 법문을 “관계부처회의의 의장과 위원”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9)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차관급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자원안보협의회) 「통합방위법」(중앙 통합방위협의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산업조정위원회) 등을 들 수 있음.

30) **입법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생략)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⑥ (생략)

라.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 협력(안 제15조~제20조)

1) 국제투자분쟁 관련 협력(안 제15조·제16조)

안 제15조는 효율적인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관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국제기구 등에 인력 파견이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는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범부처적인 대응을 위한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의 자료 제출 및 예산 편성·집행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것임.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범부처적인 대응과 협력을 위하여 유관기관의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계기관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타당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제15조(국제투자분쟁 관련 업무 협력) ① 법무부장관은 국제투자분쟁 관련 예방·대응, 연구 및 조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인력 파견 및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 등) ①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수집, 정보 공유 및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② 단장은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국제투자분쟁과 관련된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중재판정부의 명령 이행 등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존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단장의 자료보존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은 국제투자분쟁과 관련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에 따라 단장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해야 하며, 협력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근거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단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안 제15조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³¹⁾에서 이미 국가기

3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기간·절차,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 채용,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파견되는 사람이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

③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국가안보 관련 목적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이 조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관의 장이 국가적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을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³²⁾

한편, 안 제16조는 제1항에서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상호 협력의무를, 제2항에서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의 단장이 각 기관에 국제투자분쟁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제3항·제4항은 자료 보존 및 증언·진술 청취에 관한 협력 요청 근거를 규정함.

이는 중재가 제기되어 실제 중재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대방의 문서 제출요청³³⁾에 따라 중재재판부가 정부에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련되는 사람 또는 기관으로부터 문서를 확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국제투자분쟁의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음.³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 ⑩ (생략)

32) 입법례를 살펴보면, 인력 파견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기관의 장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거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도 국가기관의 장을 거쳐 인력 파견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33) Requests for Production of Documents

34) ICSID ARBITRATION RULES(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다만,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의 행정사무 처리기관까지 포함³⁵⁾하고, “유관기관”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과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사인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하고 불확정적인 개념에 해당함.

안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협력의 대상은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중 국제투자분쟁과 관련성이 있는 기관인 “분쟁관계기관” 또는 분쟁의 원인이 되는 “처분소관기관”일 것인바, 대상기관을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Rule 29 – First Session

- (1) The Tribunal shall hold a first session to address the procedure, including the matters listed in paragraph (4).
- (4) Before the first session, the Tribunal shall invite the parties' views on procedural matters, including:
 - (g) whether there will be requests for production of documents as between the parties and, if so, the scope, timing and procedure for such requests;

Rule 29 – 첫 번째 심리기일

- (1) 재판부는 제4항에 열거된 사항을 포함한 절차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첫 번째 심리기일을 개최하여야 한다.
- (4) 재판부는 첫 번째 심리기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다음을 포함한 절차적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g) 당사자들 사이에 문서제출 요청이 있을 것인지 여부, 있을 경우 그 요청의 범위, 시기 및 절차

Rule 36

Evidence: General Principles

- (1) The Tribunal shall determine the admissibility and probative value of the evidence adduced.
- (2) Each party has the burden of proving the facts relied on to support its claim or defense.
- (3) The Tribunal may call upon a party to produce documents or other evidence if it deems it necessary at any stage of the proceeding.

Rule 36 – 증거: 일반 원칙

- (1)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의 허용 여부 및 증명력을 판단한다.
- (2) 각 당사자는 자신의 청구 또는 방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용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3) 재판부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문서 또는 기타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5) 정의규정에 따르면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각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등)도 포함됨

한편, 안 제16조제1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화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³⁶⁾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6) “상호협력할 의무가 있다”를 “상호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과 개시사실 통보(안 제17조 및 제18조)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국제투자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국제투자분쟁 개시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 해당 사실을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의 단장(법무부차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7조(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 통보) ①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단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이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협정 또는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이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분쟁 해결절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거나 이미 시행된 법령, 행정처분, 그 밖의 정책이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외국인 투자자가 법령, 행정처분, 그 밖의 정책에 대해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또는 국제투자분쟁의 제기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우 5.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국제투자분쟁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단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분쟁해결절차 개시 사실 통보) ① 국제투자분쟁 상대방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개시 의사를 통보받은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단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분쟁해결절차 개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쟁관계기관을 지정하고, 분쟁관계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분쟁관계기관으로 지정된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7조는 국제투자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1항 각 호로 명시하면서,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이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의 단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단장은 그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여 그 사실을 다시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제투자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실제로 국제분쟁절차 개시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그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다만,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규정한 제17조제1항 각 호 중 행정기관 등의 외국인 투자자와의 계약체결(제1호·제2호), 외국인 투자자의 국제투자분쟁 가능성 제기(제4호·제5호)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통지여부가 결정될 것임. 그러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행될 예정이거나 시행된 법령, 행정처분, 그 밖의 정책이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판단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국제투자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순히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 재산권 침해가 조약·협정에 따른 의무위반에 해당하여야 함. 그럼에도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만으로 의안이나 법률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분쟁발생 가능성을 통지할 경우 법률안 심의과정과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불필요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그 대상을 조약·협정에 따른 의무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18조는 외국인 투자자 등 상대방으로부터 분쟁해결절차 개시 의사를 통보받은 기관이 그 사실을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의 단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응단의 단장이 분쟁관계기관을 지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미 분쟁이 발생한 이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경미한 자구 수정사항으로서 안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분쟁해결절차 개시 의사”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이 대응단의 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실을 “분쟁해결절차 개시 의사를 통보받았다는 사실”과 “분쟁해결절차의 개시 사실”로 혼용하고 있음.

“분쟁해결절차 개시 의사”는 정의상 상대방의 중재의향서 제출³⁷⁾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중재의향서 제출이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통보 시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 “분쟁해결절차 개시 사실” 등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37) 정식 중재제기에 앞서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위해 상대 정부에 보내는 서면에 해당함.

3) 국제투자분쟁 예방 이행점검(안 제19조)

안 제19조는 법무부장관이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국제투자분쟁 발생가능성을 관리하도록 하고, 국제투자분쟁 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국제투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 어떠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국제투자분쟁 예방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결정하는 주체와 그 결정 방식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규정하거나 이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음. 그러므로 이행점검에 관한 규정을 두기 위하여는 먼저 준수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제19조(국제투자분쟁 예방 이행점검) ① 법무부장관은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국제투자분쟁 발생가능성을 관리하고, 예방 관련 준수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예산 편성 및 집행(안 제20조)

안 제2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예산이 원활히 편성·집행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국제투자분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의 소관기관에 대리인비용과 같은 법률비용과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³⁸⁾

제 정 안
제20조(예산 편성 및 집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본 법에 따른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예산이 원활히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분청(처분소관기관)은 법률비용, 중재행정비용 및 기타 대응단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등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항에 대하여 법무부는 중전의 훈령에는 처분소관기관이 국제투자분쟁 관련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예산요구 및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 원활한 예산요구 및 집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38)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삼성물산 합병 건 투표 찬성 압력 행사로 인하여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였던 엘리엇(2018. 7. 12., 한-미FTA)과 메이슨(2018. 9. 13., 한-미FTA)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서 실무상 법무부는 소송수행, 보건복지부는 예산(집행)을 담당한다고 설명하면서, 엘리엇과 메이슨과 관련된 법률비용 및 중재 수행을 위한 행정비용[로펌 자문 비용, 중재인 보수 및 비용, 증인·전문가 보수, 심리기일 등 참석 여비 등]을 보건복지부에 편성하고, 실제 법률대리인에 대한 지휘 및 소송총괄 업무는 법무부(당시 법무실, 현재 국제법무국)에서 수행하였음.

그러나 예산은 「정부조직법」 및 직제(대통령령 및 부령)에 따른 각 기관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임. 현재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기능은 법무부에서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바, 기능과 예산을 형식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음. 또한,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현행 법체계상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심의·의결권은 입법부에 있는바 각 기관에 예산 편성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³⁹⁾

관련하여, 행정부에 예산편성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례는 없으나, 특정 분야의 우선적인 예산 편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한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생략)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초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기술개발사업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⑦

「우주개발 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① · ② (생략)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인력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과학기술기초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9) 국제투자분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의 소관기관에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국제투자분쟁에 소요되는 중재 행정비용 등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이자 집행기관인 법무부에 편성할지는 재정당국과 국회의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다를 것임.

한편, 안 제1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현재의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⁴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 밖에 경미한 자구 수정 사항으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안 제1항의 “본 법”은 “이 법”으로, 안 제2항의 “의무를 진다”는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0) “예산이 원활히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마. 그 밖의 자구수정 및 부칙

개정안에서는 장(章)을 구분하면서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제1장(계획 수립 및 인력 양성),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2장(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체계),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제3장(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 협력)으로 구분하고 있음.

조문 수가 적은 경우에도 그 성질에 따라 구분이 필요한 경우 장을 구분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법률 전체(제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제1장(총칙)으로, 제1장부터 제3장까지를 각각 제2장부터 제4장까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된 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대부분 현재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사항을 상향 규정한 것으로, 이미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한 적용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4조제4항, 제6조제5항 등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전문 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 등 조직 운영을 위한 규칙을 정비하기 위한 유예기간(3개월)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종전에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였던 “국제투자분쟁대응단”과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의 직무 연속성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과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와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IV. 관계기관 의견

1. 법무부

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현재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는 대통령 훈령인 「국제투자분쟁 대응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행정부에 한정하여 구속력이 발생하는 훈령의 한계가 있어 그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동 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① 법률상 국제투자분쟁을 사유로 한 자료 제출 근거가 없어⁴¹⁾ 행정정보의 제출·수집에 한계가 있다는 점,⁴²⁾ ② 처분 소관기관의 예산 편성·집행 근거가 없어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 ③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위한 기관 간 협조 필요성을 근거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1) 개별 법령, 기관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자료를 미제출·불충분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패소 가능성 증가로 직결(ISDS 절차의 특징으로, 정부가 보관할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미제출 시 정부에게 불리하게 사실관계를 추정함)되는바, 관계기관의 협력 의무 및 분쟁대응단의 자료 보존·제출 요청 권한 등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범정부적 협력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 가능

4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 8. (생략)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 ⑥ (생략)

2.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는 안 제2조제3호의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법원을 포함한 독립기관의 행정사무 처리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포섭하여 제정안에 따른 의무를 부과⁴³⁾하거나, 법무부장관 및 그 산하조직(대응단)의 관리·감독에 놓이도록 하는 것은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안 제8조제3항 및 안 제11조에 대하여,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단 및 관계부처회의에 “기획예산처”가 포함될 필요가 없고, 예산 관련 사항은 통상적인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안 제8조제6항제5호, 제12조·제16조 및 제20조에서 국제투자분쟁 대응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 협조에 관하여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 편성·집행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무회의·국회심의 등 일반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고, 특정 이슈에 대한 편성·집행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⁴⁴⁾

43)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예산편성 협조(안 제4조),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 협력(안 제16조제1항), 대응단 단장 요청에 따른 관련 자료 보존·제출(안 제16조제3항), 소속 공무원의 증언 및 진술(안 제16조제4항), 단장에 대한 각종 통보(안 제17조제1항, 제18조), 법무부장관의 국제투자분쟁 예방 관련 준수사항의 이행 상황 점검 수검(제19조제1항)

44) 이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통상적 입법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비용 부담” 등으로 관련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국제투자분쟁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안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의무규정을 각각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